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21호 2020. 5. 2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8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85호 삼척시 도로명 부여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86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 7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02호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9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9호 도로의 지정·공고 ----- 18

삼척시 고시 제2020 - 8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철거)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002-55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5.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산317-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002-55	20200522	가설건축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산45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1047	2020052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미로,노곡, 근덕)연결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용 (미로,근덕)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77-4		2020052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노곡, 근덕)연결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용 (미로,근덕)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145, 276-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96	20200522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르기존도로명 활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64-36		20200522	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르기존도로명 활용
6	강원도 삼척시 교동 389	강원도 삼척시 뒗나루길 287-43 (교동)	20200522	가설건축물	20090626	지역지명(후진) 옛명칭활용
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51-5, 산53-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	20200522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방위활용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58		20200522	철거	20090626	지역명(마을명),초당 저수지명칭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내역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순번	계	9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마리 산3·7-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002-55	20200522	가설건축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산45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1047	2020052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구간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77-4		2020052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구간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145, 276-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96	20200522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84-36		20200522	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교동 389	강원도 삼척시 뒷나무길 287-43 (교동)	20200522	가설건축물	20090626	지역지명(후진)옛명칭활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51-5, 산53-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	20200522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방위활용	심포 푸티스마켓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58		20200522	철거	20090626	지역명(마을명), 초당저수지명칭활용		
부여	9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음리 33, 8, 8-3, 8-4, 8-7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음안길 337	20200522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0 - 85호

삼척시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삼척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2.

삼척시장

- 고시일 : 2020. 5. 22.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대상 : 1개 노선 (우지3길)
 - 부여내용 : 부여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서면 동의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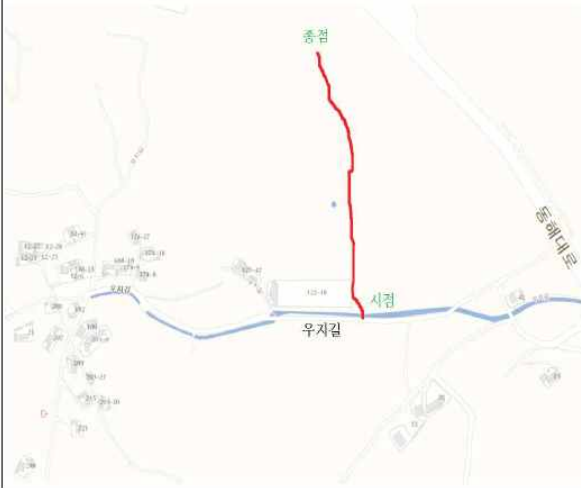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033-570-3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부여 조서

조 서	예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동 일 도로명	도로명 부여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우지3길	길	교통	우지동 198-2	우지동 109	360	3	20	1→34	없음	우지길에서 분기되어 일련번호 방식으로 부여

위
지
도



삼척시 고시 제2020 - 86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관내 대상건물에 직권부여한 상세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2.

삼척시장

○ 상세주소 직권부여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443-8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구분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고시일자
1	상세주소 부여(직권)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443-88	가동 나동	2020.5.22.

삼척시 공고 제2020-502호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삼척시장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심포 뷰티스마켓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설의 위치 및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시설의 이용시간 및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10조)
-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5. 19. ~ 6. 8.(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 전화 : 033-570-4057

○ FAX : 033-570-3187

5.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이하 “뷰티스마켓”이라 한다)이란 복합매장, 각종 뷰티체험실, 미디어아트, 뷰티교육장 등 뷰티 관련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뷰티스마켓의 위치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종류) 뷰티스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험시설 : 왁싱, 뷰티네일 등 뷰티 관련 체험시설
2. 판매시설 : 화장품, 미용용품, 음료 등을 판매하는 시설
3. 기타시설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뷰티스마켓의 부대시설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뷰티스마켓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뷰티스마켓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뷰티스마켓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뷰티스마켓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날,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 화요일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입장료 및 체험료) ① 뷰티스마켓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역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주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재해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뷰티스마켓 입장료(제8조제1항 관련)

○ 입장료

대 상	성 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5,000	4,000	3,000
단체	4,000	3,000	2,000

※ 대상 기준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군인사법」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 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

[별표 2]

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별 체험료(제8조제2항 관련)

○ 체험료

체험명	요금	비고
헤어라인체험	10,000	
퍼스널컬러&피부진단체험	1,000	
조향사체험	7,000	
브로우체험	10,000	
왁싱체험	50,000	
빛의체험	입장료 포함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	입장료 포함	

※ 왁싱체험

- 왁싱관련 통합패키지체험 요금은 50,000원이며, 각 신체부위별 왁싱체험은 체험장 내 요금표 기준에 따른다.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20- 9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5번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5, 139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36.0m, 너비 : 6.0m, 면적 : 116㎡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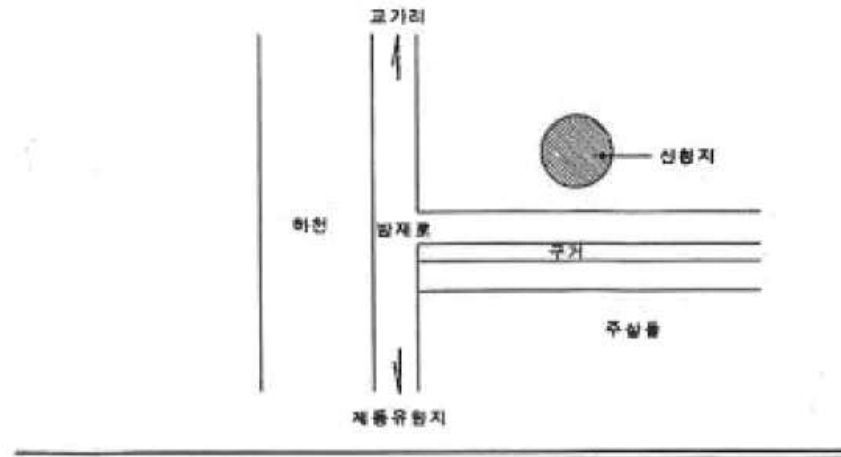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교가리	125	답	514	446	68	안*용
교가리	139	전	1,298	1250	48	김*욱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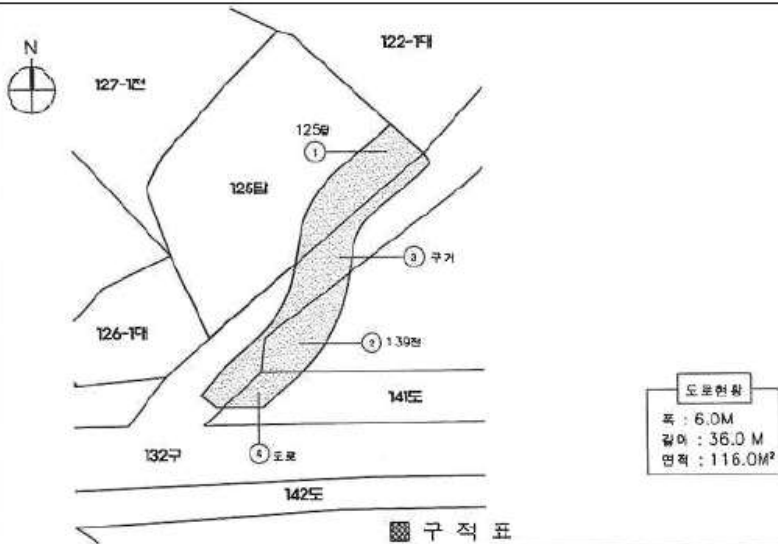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부근 안내도 축척: 없음



위치도

축척 <임의>



■ 구적표

대지위치	광원도 삼척시 근역면 교가리 125번지			소유자
	지적상대지면적	전입요적면적	전입도면적면적 (도로대장)	
125번	514.0M ²	446.0M ²	68.0M ²	분양소류 영호용
139번	1,298.0M ²	1,250.0M ²	48.0M ²	사용승낙 김차복
132구	14,762.0M ²	14,660.0M ²	82.0M ²	국 (농림수산부)
141도	1,104.0M ²	1,087.0M ²	17.0M ²	국 (농림수산부)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